

NEWSLETTER 575

Nov 9, 2021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2021.10.28. 시행)

2021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을 근거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품목분류(HS Code)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입요건 등의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변경고시 대상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수출입하시는 경우 적용 중인 품목분류를 반드시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I. 변경고시 내용

- 시행일: 2021년 10월 28일
- 적용일: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가능)

연번	품명	변경 전	변경 후
1	ALL-IN-ONE SOUND SYSTEM; AK T1	제8519.81-2900호	제8518.22-0000호
2	1.8인치 TFT LCD; C018CAN01	제8512.20-2090호	제8529.90-9990호
3	LCD(TTA2A2458)	제8512.20-2090호	제8531.20-1000호
4	ASHTRAY ASM-F/FLR CNSL ; 94579619	제3926.30-0000호	제3926.90-9000호

II. 상세 내용

1. SOUND BA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ALL-IN-ONE SOUND SYSTEM; AK T1
종전공문	품목분류3과-2534 (2015.9.11.)
물품설명	TV나 스마트폰 등에서 출력되는 전기신호를 받아 음향신호로 증폭출력하는 막대 형상의 복합형 스피커(사운드바)와 보조 스피커(서브우퍼), 조절기 등이 하나의 소매포장 형태로 제시
변경 전 HS 품목번호	제8519.81-290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0%)
변경 후 HS 품목번호	제8518.22-000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4%)
변경사유	사운드바의 주된 기능은 스피커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8518.22-0000호에 분류 (제2021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2. 1.8인치 TFT LCD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1.8인치 TFT LCD; C018CAN01
종전공문	품목분류3과-7306 (2018.12.26.)
물품설명	차량용 전방표시장치(HUD; Head Up Display)에 결합되어 영상정보를 표시하는 1.8인치 TFT-LCD 모듈로, 구동(Driver) IC와 인쇄회로기판(FPCB) 등이 부착되어 있음
변경 전 HS 품목번호	제8512.20-2090호 (기본세율 8%)
변경 후 HS 품목번호	제8529.90-999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0%)
변경사유	제시된 LCD 모듈 상태에서는 <u>제한된 정보를 표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u> 제8529.90-9990호에 분류 (제2021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3. Segment LCD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LCD(TTA2A2458)
종전공문	품목분류3과-3463 (2015.12.8.)
물품설명	자동차 공조기(air conditioner) 제어반에 부착되어 공조기 상태정보를 표시하는 Segment 방식의 단색 투과형(transmissive) LCD 모듈로, 23개의 전기접속자와 편광판이 결합되어 있음
변경 전 HS 품목번호	제8512.20-2090호 (기본세율 8%)
변경 후 HS 품목번호	제8531.20-100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0%)
변경사유	차량 내부의 온-습도를 조절하는 장치에 사용되는 시각표시반은 제8512호의 <u>시각신호용기기의 범주로 볼 수 없어</u> 제8531.20-1000호에 분류 (제2021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4. ASHTRAY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ASHTRAY ASM-F/FLR CNSL ; 94579619
종전공문	품목분류1과-248 (2017.2.2.)
물품설명	차량용 컵 홀더에 끼워 거치하여 사용하도록 설계·제작된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소형 재떨이(크기 : 70mm*110mm)
변경 전 HS 품목번호	제3926.30-000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6.5%)
변경 후 HS 품목번호	제3926.90-900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6.5%)
변경사유	<u>차체의 부착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u>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제3926.90-9000호에 분류(제2021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수출입물품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 개정안

| Contact



김찬란 관세사

T 02-6011-3026
E clkim@esein.co.kr



남근혜 컨설턴트

T 02-6011-3076
E khnam@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1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